

「구미시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」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5년 9월 2일

나. 발 의 자: 김원섭 · 김정도 의원(2인)

다. 찬 성 자: 김근한, 김민성, 김재우, 김춘남, 소진혁, 신용하,
장세구, 정지원, 추은희 의원(9인)

라. 회부일자: 2025년 9월 2일

마. 상정일자: 2025년 9월 11일

제290회 구미시의회 임시회

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: 김 원 섭 의원

나. 제안이유

-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, 관내 상공인 상품을 우선구매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함

다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적용범위, 적용대상 기관 등(안 제1조~제5조)
- 구매촉진, 지역상품 우선구매, 업체 정보 제공(안 제6조~제8조)
- 포상, 공공구매 실무협의회 등(안 제9조~제11조)

라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

-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
-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
- 「소상공인기본법」 제2조

○ 기 타 : 조례안 예고(2025. 9. 2. ~ 9. 7.) 결과 의견없음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임 호 규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 공공기관이 물품, 용역 및 공사에 필요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제정 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6조와 제7조에서 시장은 지역상품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고 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지역상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며, 안 제8조에서는 관내 공공기관에 지역 생산 상품 및 업체 정보 등을 제공하여 지역상품의 판로 지원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.
- 특히, 안 제10조에서 공공구매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실질적인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, 관련 부서 간의 업무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향후 실무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되지 않도록 협의회 활동의 정례화 등 구체적인 활동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.
- 또한, 관계 부서에서는 우수한 지역생산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업체 정보와 생산 상품 등의 데이터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 략

5. 토 론 요 지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: 없 음

7. 심 사 결 과: 원안가결